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5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필수업무종사자 정의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조항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다.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 변경(안 제3조 부터 제9조, 제12조, 제14조)

라. 지원계획 수립 시기 특정(안 제6조)

마.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9조)

바. 위원회 소집사유를 구체화하고, 간사를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안 제12조)

4.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및 3호, 제3조, 제10조, 제11조제1항

5. 검토의견

① 개정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2020.12.14),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5.18)하였음(2021.11.19. 시행)
- 금천구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2020.12.31.)하였으나,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종합의견

- 개정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지원계획,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음
-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동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